

과태료의 부과기준 (제31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금액
가. 삭제 <2017. 10. 17.>		
나.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27조의2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69조 제1항제1호	6,000
다. 법인인 자가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유사상호를 사용한 경우	법 제69조 제1항제2호	6,000
라.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유사상호를 사용한 경우	법 제69조 제1항제2호	3,000
마. 법 제15조제2항 및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69조 제1항제3호	3,000
바. 법인인 자가 법 제15조의3제3항(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), 제16조의4제2항 또는 제35조의5제1항·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69조 제1항제4호	6,000
사.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5조의3제3항(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), 제16조의4제2항 또는 제35조의5제1항·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69조 제1항제4호	3,000
아. 삭제 <2016. 7. 28.>		
자. 은행이 법 제30조를 위반한 경우	법 제69조 제1항제5호	10,000
차. 은행이 법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	법 제69조 제4항	1,000
카. 은행이 법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69조 제1항제5호의2	3,000
타. 은행이 법 제34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69조	6,000

	제1항제5호의3	
파. 삭제 <2017. 10. 17.>		
하. 은행이 법 제3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69조제2항제1호	3,000
거. 은행이 법 제35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	법 제69조제1항제6호	10,000
너. 은행이 법 제35조의2제5항·제6항 또는 제35조의3제5항·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69조제1항제7호	6,000
더. 은행이 법 제41조에 따른 공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	법 제69조제1항제7호의2	6,000
러. 은행이 법 제43조의2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경우	법 제69조제1항제7호의3	6,000
머. 은행이 법 제43조의3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한 경우	법 제69조제1항제7호의4	6,000
버. 은행이 법 제4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주주총회에 보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한 경우	법 제69조제2항제2호	3,000
서. 은행이 법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69조제1항제7호의5	10,000
어. 은행의 임원, 지배인, 대리점주(대리점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, 임원, 지배인, 그 밖의 법인의 대표자) 또는 청산인(이하 "은행의 임원등"이라 한다) 또는 직원이 법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69조제5항제5호	2,000
저. 법인인 자가 법 제48조의2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69조제1항제8호	10,000
쳐.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48조의2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69조제1항제8호	5,000
커. 은행이 법 제52조의2를 위반한 경우	법 제69조제1항제9호	3,000
터. 은행이 법 제52조의4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	법 제69조제3항	1,800
퍼. 은행이 법 또는 법에 따른 규정·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	법 제69조제1항제11호	2,000
허.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, 제출, 보고, 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경우	법 제69조제5항제7호	200

고.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법 또는 법에 따른 규정·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	법 제69조 제5항제8호	200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